정보보호 서약서

- 인증위원 임기: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위 기간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인증위원회 위원으로서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사실에 대한 비밀을 유출 또는 공개하지 아니할 것이며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 :

성명 : (서명)

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비밀 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벌칙) 제32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 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마.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